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. 2. 9 선고 2020가단10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1. 2. 9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9. 11.19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19. 11. 19. 접수 제10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박민지

별지